

#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2002-3
----------	--------

제출년월일 : 2002. 1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 1. 제정이유

-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시행됨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을 정함(안 제2조,제4조)
-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 5조)
-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방법을 정함(안 제12조, 제14조)
-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보건복지부 생보 65130 - 750 (2000. 9. 16)호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예시 통보]

##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시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인의 보증을,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15,000원이상의 지방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①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자금의 종류 및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라. 의료비, 장제비, 부채상환 처리 비용 등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

2. 자조·자립자금은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자금대여 신청 현재 관내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관내에서 사용하는자에 한한다.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대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②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할 수 있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⑥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업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

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융자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 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④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⑤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으로 한다.

⑥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⑧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⑨김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⑩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⑪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대부신청서

1. 주 소 :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2. 대 부 신 청 금 액 :
3. 대 부 신 청 사 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 (연 %, 연체시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 나. 사 업 내 용 :
- 다. 사 업 장 위 치 :
- 라. 사업의 필요성 :
- 마. 사업 실시 기간 :
- 바. 재 원 계 획 :

(단위:천원)

총 사업비	용 자	자 부 담	자 부 담 방 법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천원)

총 수 익	총 비 용	손 수 익	비 고

※ 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김제시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국민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자금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 면 동 장 : (직인)

김 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 재 정 보 증 서

용자대상자 주 소 : 김제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가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  
대하여 보상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인감대조확인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김 제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관리번호				전화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융자금액		원	융자일	.	.	이자	%			
사업명						만기일	.			
보증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환 내 역 .										
회 수	상환일자	상 환 금			상환 잔액	납부 일자	연체이자(년 %)			비 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 신 · 구조문 대비표

### □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결정사항) (생략) 1. ~ 11. (생략) 12. <u>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할 의 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사항</u> 13. ~ 20. (생략) 21. <u>저소득자활복지기금관리등에 관한 사항</u> 22. ~ 30. (생략)	제3조(결정사항)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 20. (현행과 같음) <삭 제> 22. ~ 30. (현행과 같음)

### □ 김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②(생략) 1. <u>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u> 2. (생략)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①~②(현행과 같음)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2. (현행과 같음)

### □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생략) 1. <u>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u> 2. (생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현행과 같음)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 ----- 2. (현행과 같음)

□ 김제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학금 종류 및 자격) ①(생략)</p> <p>1. 특별장학생은 <u>생활보호대상자</u> 및 <u>영세농어민의 자녀</u>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학년 정원의 10퍼센트이내인 자</p> <p>2. 일반장학생은 <u>생활보호대상자</u> 및 <u>영세농어민의 자녀</u>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p> <p>②(생략)</p>	<p>제5조(장학금 종류 및 자격) ①(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 -----</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 -----</p> <p>②(현행과 같음)</p>

□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생략)</p> <p>1. ~ 3. (생략)</p> <p>4. <u>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u>(해당 장애인에 한함)</p> <p>제5조(우선계약) ① ~ ②(생략)</p> <p>1. <u>생활보호대상 장애인</u></p>	<p>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u>(-----)</p> <p>제5조(우선계약) ① ~ ②(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u> -----</p>

□ 김제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육대상자) (생략)</p> <p>1. <u>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u></p> <p>2. ~ 5. (생략)</p>	<p>제7조(보육대상자) (현행과 같음)</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p> <p>2. ~ 5. (현행과 같음)</p>

□ 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 감면) (생 략) 1. (생 략) 2. <u>생활보호대상자</u> 3. ~ 4. (생 략)	제12조(사용료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3. ~ 4. (현행과 같음)

□ 김제시생활폐기물처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생 략) 1. <u>생활보호법</u>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 (생 략) ②(생 략)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생 략) 1. <u>생활보호법의</u> 규정에 의한 보호대 상자 2. ~ 3. (생 략) ② ~ ③(생 략)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현행과 같음)

□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생 략) 1. ~ 2. (생 략) 3. <u>불우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u> 경노자·군경행사 4. (생 략)	제13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u> 수급자·----- 4. (현행과 같음)



□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

현행	개정안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생략)</p> <p>1. ~ 2. (생략)</p> <p>3. 불우청소년·<u>생활보호대상자</u>·어린이·경노자·군경·장애인 행사</p> <p>4. (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u> <u>수급자</u>·-----</p> <p>4. (현행과 같음)</p>